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징계 근거 마련〉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76호)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 신설〉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7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징계 근거 마련〉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77호)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 신설〉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79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개 요	1
--------------	---

【박정현의원안】

1. 국가공무원법	1
2. 지방공무원법	3

【전용기의원안】

5

1. 국가공무원법	5
2. 지방공무원법	7

II. 검토의견	9
----------------	---

1.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징계 근거 마련(박정현의원안)	9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9
나. 검토의견	10
2.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 신설(전용기 의원안)	13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13
나. 검토의견	14

I. 개 요

【박정현의원안】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
3. 회부연월일 : 2025. 12.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고, 이후 국회에서 개별 부처 소속 공무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를 요구했지만 몇몇 부처는 이행하지 않았음.

한편, 최근 정부는 ‘헌법준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공무원들이 비상계엄 당시 모의·실행·정당화·은폐에 가담한 관련성을 조사하여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고 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헌법을 파괴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8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2.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고, 이후 국회에서 개별 부처 소속 공무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를 요구했지만 몇몇 부처는 이행하지 않았음.

한편, 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공무원들이 비상계엄 당시 모의·실행·정당화·은폐에 가담한 관련성을 조사하여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고 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헌법을 파괴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하여 공

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9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용기의원안】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4.
3. 회부연월일 : 2025. 12.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실행·정당화·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현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의무로서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의 의무 및 반헌법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4.
3. 회부연월일 : 2025. 12.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실행·정당화·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현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의무로서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의 의무 및 반헌법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

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5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¹⁾

1.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징계 근거 마련(박정현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무원이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가담 또는 그 범죄에 가담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가담 또는 그 범죄에 가담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때</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조문 취지 및 개정 내용이 동일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나. 검토의견

공무원의 의무는 현행법²⁾을 비롯하여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규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은 선서 의무,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지고 있음.

공무원이 이와 같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현행 법률 및 이에 따른 명령 위반(제1호),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제2호), 직무의 내외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제3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징계사유에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³⁾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가담 또는 그 범죄에 가담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2) 현행법 제7장(복무)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제55조(선서),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3)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징계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및 공무원 관계 내부에서 불이익한 조치가 수반되므로 징계처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헌적 행위의 징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공무원의 헌법 준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요구되는 공무원의 기본 의무라 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추가하려는 징계 대상 행위도 현행법상 징계 사유인 “이 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와 관련된 별도의 징계 사유를 규정할 실익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국가공무원법」 상 헌법 준수 관련 의무》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혁신처는 헌법 가치의 준수와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나, 제안된 징계 사유가 이미 현행법상 법령 위반이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조항을 마련할 실익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음.

행정안전부도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 등을 징계사유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행법에서도 ‘성실의 의무’에 위반되어 지방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 신설(전용기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무원의 의무로서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의 의무와 반헌법 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의2(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의 의무) 공무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64조의2(반헌법행위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하 “반헌법행위”라 한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반헌법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검토의견

공무원의 의무는 현행법을 비롯하여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규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은 선서 의무,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무원의 의무로서 반헌법행위 금지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공무원의 의무로서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존중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반헌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선전·선동·옹호·정당화하지 않을 의무를 신설함으로서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 수호나 헌법존중 의무는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의 의무(안 제56조의2)와 반헌법행위 등의 금지 의무(안 제64조의2)는 각각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사한 내용이므로 해당 조문들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높지 않아 보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나,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의 의무와 반헌법행위 등의 금지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음.

행정안전부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의무 조항인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의 의무”와 금지 조항인 “반헌법행위 등의 금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